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 1. 인적사항

상 호(단 체 명)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성 명(대 표 자)		(자 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 A X 번 호	
사업장(단 체) 소재지		

### 2. 사업장 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주업태	부업태	주종목	부종목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m <sup>2</sup>	m <sup>2</sup>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허 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통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 세무 계산서 (e세로)	회원가입 신청 여부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등록됩니다. 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전용메일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e세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li> <li>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li> <li>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형장소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